2023학년도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군산구암교육과정설명회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54034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경암 3길 64-1

HOMEPAGE http://www.ksguam.es.kr

·교장실: (063) 443-1630 ·교무실: (063) 445-2405 ·행정실: (063) 445-2406 ·FAX: (063) 445-3270

I. 2023학년도 교육계획 안내

- 1. 학교현황
- 2. 본교 교육과정 운영 안내
 - 군산구암교육목표
 - 2023학년도 학사일정
 - 특색사업 추진계획
 - 주요교육활동계획
 - 학생평가
 - 방과후교육활동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학교연황

1. 연혁

| 년 월 일 | 연 혁 |
|--------------|-----------------------------------|
| 1945. 05. 05 | 설립인가 |
| 1945. 06. 17 | 구암교회당으로 개교 |
| 2023. 01. 06 | 제77회 졸업장 수여식(총 18970 명 졸업) |
| 2023. 03. 01 | 19학급 편성(일반학급 17, 특수학급 2) |
| 2023. 03. 01 | 제 22대 김선애 교장선생님 부임 |

2. 학급 및 학생 현황

(2023년 3월)

| 학 | 년 | 1 | 2 | 3 | 4 | 5 | 6 | 특수 | 계 |
|---|---|----|----|----|----|----|----|------|-----|
| 학 | 급 | 3 | 3 | 3 | 2 | 3 | 3 | 2 | 19 |
| 학 | 남 | 29 | 36 | 28 | 27 | 32 | 33 | (8) | 185 |
| 생 | 여 | 22 | 22 | 30 | 22 | 26 | 26 | (4) | 148 |
| 수 | 계 | 51 | 58 | 58 | 49 | 58 | 59 | (12) | 333 |

3. 교직원 현황

| 인원 | 구분 | 교장 | 교감 | 부장 교사 | 교사 | 보건 교사 | 영양 교사 | 특수 교사 | 계 | 행정 실장 | 교육 행정직 | 교육 공무직 | 계 | 합계 |
|----|----|----|----|----------|----|----------|----------|----------|----|----------|-----------|-----------|----|----|
| 인 | 남 | | | 1 | 6 | | | 1 | 8 | | 2 | 2 | 4 | 12 |
| 원 | 여 | 1 | 1 | 5 | 8 | 1 | 1 | 1 | 18 | 1 | 1 | 4 | 6 | 24 |
| 수 | 계 | 1 | 1 | 6 | 14 | 1 | 1 | 2 | 26 | 1 | 3 | 6 | 10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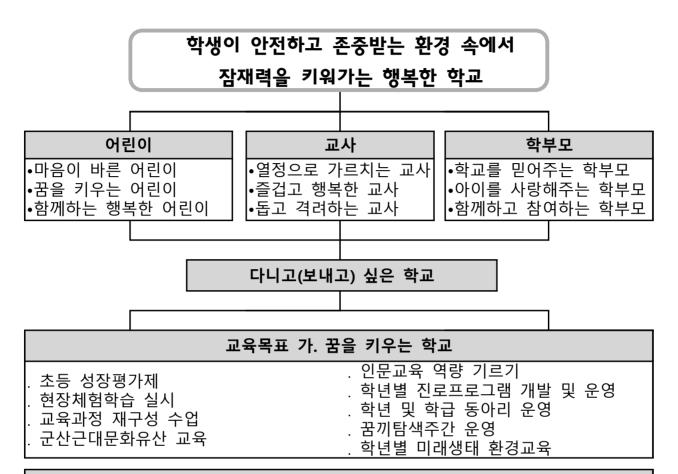
4. 시설 및 설비 현황

| 구분 | 학교부지 | 운동장 | 보통교실 | 특별교실 | 관리실 | 보건실 | 화장실 | 급수시설 |
|----|----------|----------|------|------|-----|-----|-----|------|
| 실 | 27.875m² | 24.629m² | 19실 | 23실 | 4실 | 1실 | 8실 | 1개소 |

2

본교 교육과정 안내

1. 군산구암 교육목표



교육목표 나. 마음이 자라는 학교

. 교육과정과 연계된 덕목중심 인성교육 실시 . 스포츠 데이 ,스포츠클럽 리그

. 입학초기 적응활동 교육 실시 . 바르게 인사하기 활동

친구사랑 주간 운영 . 교육복지의 날 운영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실시 . 생태환경 중심 원도심 프로젝트 학습

교육목표 다.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 학생 자치활동 강화 . 전래놀이 수업 운영

.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도서관 운영

. 교육과정 설명회 실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 함께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숲을 활용한 통한 생태교육 . 학급축제 형식의 학급발표회

특색사업

"온고지신"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one도심 교육

특색사업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래생태환경교육

2. 2023학년도 학사일정

2023학년도 1학기 군산구암초등학교

| 202 | 23학년도 1학기 군산구암조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 | | 4월 | | T | 5월 | | | 6월 | | | 7월 | | T | 8월 |
| 1 4 | | 1 토 | | | 월 | | | 목 | | 1 | | 토요휴업일 | 1 | 화 | • |
| 2 = | 시업식 입학식 | 2 일 | | 2 | 화 | | 2 | 금 | | 2 | 일 | | 2 | 수 | |
| 3 = | 1 | 3 월 | | 3 | 수 | | 3 | 토 | 토요휴업일 | 3 | 월 | | 3 | 목 | |
| 4 5 | 토요휴업일 | 4 화 | | 4 | 목 | | 4 | 일 | | 4 | 화 | | 4 | 금 | |
| 5 | | 5 수 | | 5 | 금 | 어린이날 | 5 | 월 | 재량휴업일 | 5 | 수 | 여름계절학교 | 5 | 토 | 토요휴업일 |
| 6 월 | | 6 목 | | 6 | - | 토요휴업일 | 6 | | 현충일 | 6 | _ | | 6 | + | |
| 7호 | | 7 금 | | 7 | | | 7 | \vdash | | 7 | 금 | | 7 | 월 | |
| 8 4 | | 8 토 | 토요휴업일 | 8 | - | | 8 | - | | 8 | | 토요휴업일 | 8 | 화 | |
| 9 = | 3기초수영(오전) 4기초수영(오후) | 9 일 | | 9 | 화 | | 9 | 금 | | 9 | | | 9 | 수 | |
| 10 = | 1 | 10 월 | | 10 | 수 | | 10 | 토 | 토요휴업일 | 10 | 월 | | 10 |) 목 | |
| 11 5 | 토요휴업일 | 11 화 | 119안전체험교육 (2,5학년) | 11 | 목 | | 11 | 일 | | 11 | 화 | | 11 | 금 | |
| 12 일 | ! | 12 수 | | 12 | 금 | | 12 | 월 | | 12 | 수 | | 12 | 토 | 토요휴업일 |
| 13 울 | 3기초수영(오전) 4기초수영(오후) | 13 목 | 봄계절학교 | 13 | 토 | | 13 | 화 | | 13 | 목 | | 13 | 일 | |
| 14호 | 3기초수영(오전) 4기초수영(오후) | 14 금 | 현 장 체 험 학 습 (1,3,4,6학년) | 14 | 일 | | 14 | 수 | 학부모 공개수업 | 14 | 금 | | 14 | 월 | |
| 15 🕆 | <u> </u> | 15 토 | 토요휴업일 | 15 | 월 | | 15 | 목 | | 15 | 토 | 토요휴업일 | 15 | 회 | ·광복절 |
| 16 = | 1 | 16 일 | | 16 | 화 | | 16 | 금 | | 16 | 일 | | 16 | 수 | |
| 17 = | 1 | 17 월 | | 17 | 수 | 을지태극연습 | 17 | 토 | 개교기념일 | 17 | 월 | | 17 | 목 | |
| 18 5 | 토요휴업일 | 18 화 | | 18 | 목 | 스포츠데이 | 18 | 일 | | 18 | 화 | | 18 | 금 | |
| 19 🖁 | | 19 수 | | 19 | 금 | | 19 | 월 | | 19 | 수 | | 19 | 토 | 토요휴업일 |
| 20 울 | 친구사랑주간행사 상담주간 | 20 목 | | 20 | 토 | 토요휴업일 | 20 | 화 | | 20 | 목 | | 20 | 일 | |
| 21호 | ł | 21 금 | | 21 | 일 | | 21 | 수 | | 21 | 금 | | 21 | 월 | |
| 22 🕇 | <u> </u> | 22 토 | 토요휴업일 | 22 | 월 | | 22 | 목 | | 22 | 토 | 토요휴업일 | 22 | 회 | • |
| 23 = | 교육과정 설명회 | 23 일 | | 23 | 화 | | 23 | 금 | | 23 | 일 | | 23 | 수 | 여름개학식 2학기 시작일 |
| 24 = | 1 | 24 월 | | 24 | 수 | | 24 | 토 | 토요휴업일 | 24 | 월 | | 24 | 목 | |
| 25 5 | | 25 화 | | 25 | 목 | | 25 | 일 | | 25 | 화 | 여름방학식 | 25 | 금 | |
| 26 ≌ | ! | 26 수 | | 26 | 금 | | 26 | 월 | | 26 | 수 | | 26 | 토 | |
| 27 월 | 1 | 27 목 | | 27 | 토 | 부처님오신날 | 27 | 화 | | 27 | 목 | | 27 | 일 | |
| 28호 | ł | 28 금 | | 28 | 일 | | 28 | 수 | | 28 | 금 | | 28 | 월 | |
| 29 🕏 | <u> </u> | 29 토 | 토요휴업일 | 29 | 월 | | 29 | 목 | | 29 | 토 | | 29 | 화 | • |
| 30 = | <u> </u> | 30 일 | | 30 | 화 | 4-6학년 교육복지 주간(~금) | 30 | 금 | | 30 | 일 | | 30 | 수 | |
| 31 = | | | | 31 | 수 | | | | | 31 | 월 | | 31 | 목 | |
| 쉅앍 | 22 | | 20 | | | 21 | | | 20 | | | 17 | | | 7(2학기) |

2023학년도 2학기 군산구암초등학교

| -0-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1월 | | | 7 참 조 등 역 J 2 월 |
|--------|-----------------------------------|----|-----|--|----|---|-------------------|----|---|------------------------|----|----------|------------|----|---|--------------------|
| 4 7 | 9월 - | 4 | OI. | 10章 | _ | | 112 | _ | _ | 12 월 | | 01 | | | | |
| 1 금 | | 1 | 일 | | 1 | 수 | | 1 | 금 | | 1 | 월 | 신정 | 1 | 목 | |
| 2 토 | 토요휴업일 | 2 | 월 | 재량휴업일 | 2 | 목 | | 2 | 토 | 토요휴업일 | 2 | <u> </u> | | 2 | 금 | |
| 3 일 | | 3 | 화 | 개천절 | 3 | 금 | | 3 | 일 | | 3 | 수 | | 3 | 토 | 토요휴업일 |
| 4 월 | | 4 | 수 | | 4 | 토 | 토요휴업일 | 4 | 월 | | 4 | 목 | | 4 | 일 | |
| 5 화 | | 5 | 목 | | 5 | 일 | | 5 | 화 | | 5 | 금 | 종업식 졸업식 | 5 | 월 | |
| 6 수 | | 6 | 금 | | 6 | 월 | | 6 | 수 | | 6 | 토 | 토요휴업일 | 6 | 화 | |
| 7 목 | | 7 | 토 | 토요휴업일 | 7 | 화 | | 7 | 목 | | 7 | 일 | | 7 | 수 | |
| 8 금 | | 8 | 일 | | 8 | 수 | 재난대응한국훈련 | 8 | 금 | | 8 | 월 | | 8 | 목 | |
| 9 토 | 토요휴업일 | 9 | 월 | 한글날 | 9 | 목 | | 9 | 토 | 토요휴업일 | 9 | 화 | | 9 | 금 | 설연휴 |
| 10 일 | | 10 | 화 | | 10 | 금 | | 10 | 일 | | 10 | 수 | | 10 | 토 | 설날 |
| 11 월 | | 11 | 수 | 교내소방대피훈련 (전학년) | 11 | 토 | 토요휴업일 | 11 | 월 | | 11 | 목 | | 11 | 일 | |
| 12 화 | | 12 | 목 |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では、 | 12 | 일 | | 12 | 화 | | 12 | 금 | | 12 | 월 | 대체공휴일 |
| 13 수 | | 13 | 금 | | 13 | 월 | 스포츠클럽리그 | 13 | 수 | | 13 | 토 | 토요휴업일 | 13 | 화 | |
| 14 목 | | 14 | 토 | 토요휴업일 | 14 | 화 | | 14 | 목 | 겨울계절학교 | 14 | 일 | | 14 | 수 | |
| 15 금 | | 15 | 일 | | 15 | 수 | | 15 | 금 | | 15 | 월 | | 15 | 목 | |
| 16 토 | 토요휴업일 | 16 | 월 | | 16 | 목 | | 16 | 토 | 토요휴업일 | 16 | 화 | | 16 | 금 | |
| 17 일 | | 17 | 화 | 가을계절학교 | 17 | 금 | | 17 | 일 | | 17 | 수 | | 17 | 토 | 토요휴업일 |
| 18 월 | 친구사랑주간행사 상담주간 | 18 | 수 | 6학년테마식현장 체험 (~20일) | 18 | 토 | 토요휴업일 | 18 | 월 | | 18 | 목 | | 18 | 일 | |
| 19 화 | 0212 | 19 | 목 | "" (= - = -) | 19 | 일 | | 19 | 화 | | 19 | 금 | | 19 | 월 | |
| 20 수 | | 20 | 금 | 현장체험학습 (1-5학년) | 20 | 월 | | 20 | 수 | 어린이회장선거 (2,3,4,5학년) | 20 | 토 | 토요휴업일 | 20 | 화 | |
| 21 목 | | 21 | 토 | 토요휴업일 | 21 | 화 | | 21 | 목 | (_,0,,0 1) | 21 | 일 | | 21 | 수 | |
| 22 금 | | 22 | 일 | | 22 | 수 | | 22 | 금 | 학급페스티벌 | 22 | 월 | | 22 | 목 | |
| 23 토 | 토요휴업일 | 23 | 월 | | 23 | 목 | | 23 | 토 | 토요휴업일 | 23 | 화 | | 23 | 금 | |
| 24 일 | | 24 | 화 | | 24 | 금 | | 24 | 일 | | 24 | 수 | | 24 | 토 | 토요휴업일 |
| 25 월 | | 25 | 수 | | 25 | 토 | 토요휴업일 | 25 | 월 | 성탄절 | 25 | 목 | | 25 | 일 | |
| 26 화 | | 26 | 목 | | 26 | 일 | | 26 | 화 | | 26 | 금 | | 26 | 월 | |
| 27 수 | | 27 | 금 | | 27 | 월 | 영어체험학습센터 (5학년) | 27 | 수 | | 27 | 토 | 토요휴업일 | 27 | 화 | |
| | 추석연휴 | | | 토요휴업일 | 28 | 화 | (J7 E) | 28 | 목 | | 28 | 일 | | 28 | 수 | |
| 29 금 | | 29 | 일 | | | 수 | | | 금 | | | 월 | | | 목 | |
| | 추석연휴 | 30 | 월 | 동료장학 | 30 | 목 | | 30 | 토 | 토요휴업일 | 30 | 화 | | | | |
| | | 31 | 화 | | | | | 31 | 일 | | 31 | 수 | | | | |
| 선 알 | 19 | | 1 | 19 | | | 22 | | | 20 | | | 4 | | | 0 |
| | ※ 수업일수 : 1학기 100일, 2학기 91일 계:191일 | | | | | | | | | | | | | | | |

- 5 -

3. 특색사업 추진계획

가. "온고지신"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one도심 교육

| 이렇게 지낼래요 | 방 법 | 시기 | 대상 |
|--|---|---------------|------------|
|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악교육 운영 | 전래동요와 우리 전통악기를 활용해 창의적체험활동 학급당 12시간 운영 1학년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을 활용해 국악교육운영 | 연중 | 1학년 |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래놀이 체험 운영 | 전통놀이 체험장을 조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학급 당 12시간 운영 학년별 수준별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래놀이 프로그램 제공 | 연중 | 2학년 |
| · 아기자기한(韓)손 전통공예 체험 운영 | 아기자기한(韓)손 공예 체험실 조성하여 창의적체험 활동 학급당 12시간 운영 한지 뜨기, 줌치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생활용품 제작 | 연중 | 3-4학년 |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코딩교육 실시 | ·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코딩교육을 실시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학급당 12시간 운영 ·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을 운영 | 연중 | 5-6학년 |
| · 함께 어울려 마음을 울리는 학급 동아리운영 | ·학생의 흥미와 소질을 고려한 학급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함(연 20시간)으로써 자치능력 및 자 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 연중 | 1-6학년 |
| ° 학부모 교육 운영 (목공 체험) | · 교내에 설치된 목공실을 활용해 희망 학부모를 대 상으로 목공체험 실시 | 4-6월 9-11월 | 학부모 희망자 |
| 생태환경 중심 원도심 프로젝트 학습 실시 | 학년 및 학급별 생태환경을 주제로한 프로젝트 학습 계획 및 운영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야 함을 깨닫고 이를 통 해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 | 연중 | 1-6학년 |

나.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래생태환경교육

| 이렇게 지낼래요 | 방 법 | 시기 | 대상 |
|---|---|------------|-------|
| 생태환경 중심원도심 프로젝트학습 실시 | 학년 및 학급별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 계획 및 운영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야 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 | 연중 | 1-6학년 |
| ∘ 학교 숲을 활용한 통한 생태교육 실시 | · 학교 숲의 사계절을 함께하는 생태 교육실시 - 생태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숲 생태교육 - 학교숲, 생태체험학습장(상자텃밭) 가꾸기 | 연중 | 1-6학년 |
| ° 학년별 미래생태환경교육실시 | · 학년별 맞춤형 미래생태환경프로그램 개발 - 관련도서 읽기, 체험활동 실시 등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계절별 운영 | 계절학교 연중 | 전학년 |
| 미래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직원 연수 진행 | · 미래생태환경교육 관련 도서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전문가 초청 교직원 연수 실시 | 연중 | 교직원 |

4. 주요 교육활동 계획

가. 기초수영 교실 실시

(1) 대상: 3-4학년 전체 학생

(2) 장소 :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3) 시간 : 각 학년별 연 10시간 (실습 9시간, 이론 1시간)

나. 예술강사 지원사업

(1) 대상: 1-2학년 전체 학생

(2) 분야 : 연극

(3) 내용 : 문예진흥원에서 선발한 예술 강사가 학교로 와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교육 실시

(4) 지원시간 : 각 반별 40시간 씩 6학급 (총 240시간 지원)

다. 학생 동아리 운영

(1) 대상 : 전교생

(2) 운영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 활용 학급당 연 20시간 운영

(3) 학년별 운영 내용 (강사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 학년 | 동아리 | 학년 | 동아리 |
|----|------|----|------|
| 1 | 놀이인성 | 4 | 우쿨렐레 |
| 2 | 국악 | 5 | 보드게임 |
| 3 | 우쿨렐레 | 6 | 뉴스포츠 |

라. 온고지신 원도심 교육

(1) 대상: 전교생

(2) 운영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 활용 학급당 연 12시간 운영

(3) 학년별 운영 내용

| 학년 | 동아리 | 학년 | 동아리 |
|----|------|----|---------|
| 1 | 국악 | 4 | 한지공예 |
| 2 | 전래놀이 | 5 | 코딩 |
| 3 | 한지공예 | 6 | 코딩 및 목공 |

5. 학생평가

가. 성장평가 실시

- 수업 속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성장평가 실시

나. 기존평가와의 차이

| 순 | 기존평가 | 성장평가 |
|---|--------------|-----------------------|
| 1 | 서열, 결과중심 평가 | 결과만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 |
| 2 | 획일화된 사고 강조 | 다양한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강조 |
| 3 | 단순 암기 위주 평가 | 지식 활용 능력 평가 |
| 4 | 지식전달의 교사중심수업 | 배움과 성장의 학생중심수업 |

다. 군산구암초 학생평가 결과 통보

- 포트폴리오 (수시), 성장평가지 배부 (학기별 1회)

6. 방과후교육활동

가. 운영 기간 : 2023. 3. 2.(목) ~ 2024. 2월까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요일 : 월,화,목,금(가,나부는 주 3회, 다,라부는 주 4회운영),

수요일은 댄스만 운영

| <2023 방과후 시간표> 가부:(<u>월,화,금</u> 운영)1-2학년, 나부(<u>월,목,금</u> 운영):1-4학년, 다,라부(<u>월,화,목,금</u> 운영):1-6학년 가능 | | | | | |
|--|------|-------|----------|-------|------|
| | 월 | 화 | 수 | 목 | 금 |
| 12:40 – 12:50 | 예비시간 | 1,2학년 | | 1,2학년 | 예비시간 |
| 12:50 - 13:30 | 가 | 5교시 | 운영 | 5교시 | 가 |
| 13:40 - 14:20 | 나 | 가 | 안함 | 나 | 나 |
| 14:30 – 15:10 | 다 | 다 | (댄스만 운영) | 다 | 다 |
| 15:20 – 16:00 | 라 | 라 | | 라 | 라 |

※ 방과후학교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알림방-방과후학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의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기회.과정.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나. 운영목표

- 학생 및 가정의 욕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교과 연계 및 학교문화조성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환경 조성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마을 공동체 구축

다. 참여 대상

- 학교 전체 학생 포괄적인 지원 대상
- 일차적 지원 대상은 다각적 상황에 따른 교육 취약성을 가진 학생

라. 영역별 프로그램 안내

| 영역 | 프로그램명 | 세부 추진 내용 | 대상 | 시기 |
|-----------|---------------------|---|---|----|
| 학생 파악 | 학생 파악 | - 학생 면담 및 가정방문 - 1학년 학급 관계형성 프로그램 -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학급 프로그램 - 4학년, 6학년 강점검사 | 전교생 및 학급 | 연중 |
| 맞춤형 지원 | 꿈과 마음이 자라는 학교 | - 학생 및 가정 상황에 맞는 학교생활 지원 (건강지원, 조식지원, 긴급지원)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관계성 향상을 위한 사제동행 멘토링 - 위생교육 및 정리수납지도 프로그램 - 보드게임 활용한 또래관계 능력 개선 프로그램 - 학생들의 욕구 반영한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 교육복지실 서포터즈(은가비 봉사단) -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길위의 여행 | 전교생 및 집중 지원 학생 ^{프로그램별} 대상인원 상이) | 연 |
| 환경 조성 |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 위기학급 및 학급지원(교과연계) 프로그램교육복지 이해 교육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학교문화조성행복한 마을공동체 활동 | 전교생 | 연중 |
| 운영 지원 | 꿈나래 | - 교육복지위원회, 동학년 협의회 운영 - 학생 지원을 위한 교내·외 사례관리팀 운영 | 교직원 | 연중 |

※ 학생 및 학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시기 및 프로그램 내용 변경 될 수 있음

마. 교육복지실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

- 교육복지실(꿈나래)
-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실
- 학생들의 쉼터 및 놀이 공간
- 고민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실 및 외부기관 자원 연계실
- 효율적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 교육복지 기획·운영·지원 업무
- 학생상담 및 가정방문, 집중지원 관리 학생 사례관리 및 지원
- 집중지원 관리 학생 발굴 및 학생 지원 활동
- 학교 내·외 사업계획 추진 및 운영, 지역사회 자원 개발 연계 활동

바. 교육복지실(꿈나래) 위치 및 연락처

- 담 당: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김○은
- 위 치: 본관 1층 꿈나래실(교육복지실)
- 문 의: 063) 445-2408

Ⅱ. 학부모대상 연수

- 1. 반부패 청렴 실천 연수
-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4. 보건교육
 - 성비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 양성평등교육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감염병 예방 교육
 - 미세먼지 대응 안내 교육
- 5.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 '반부패 청렴 실천' 학부모 연수

1. 성렴의 의미

1

- □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 입니다.

2. /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3. /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교육 계획

-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촌지 :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함

● 불법찬조금의 의미

- 가. 학교 또는 자생단체(학부모회 등)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
 - 학교 강당 개관식 준비 등
- 나. 스승의 날, 수학여행,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육행사 시 학부모가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도시락, 식사비 제공 등
- 다.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불법 집행하는 사례
- 라.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절차를 벗어나거나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 에 반하는 기부행위

● 촌지의 의미

- 가. 각종 학교 행사, 표창 등에 대한 보답으로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 나. 학부모들이 학생의 담임교사나 다른 교원에게 보답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

● 원인 분석

- 가.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잘못된 관행
-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 내신 성적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에서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 촌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부패행위의 시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
- 나. 학교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부족
- 학생교육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서 의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었고 부패행 위라는 인식 부족

4. / 국내 부패 방지제도 안내

국내 부패방지 관련법령

□ 감사원법 제20조 검찰청법 제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무총리훈령(공직기강 업무규정) 제3조~제10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2조의 2, 제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

● 국내 부패방지 기관

| 기관 | 주요업무 |
|---------|-----------|
| 감사원 | 직무감찰 |
| 검찰 및 경찰 | 범죄조사 및 기소 |
| 국무총리실 | 공직기강 |
| 행정자치부 | 행정감사 |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

● 국내 부패방지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무 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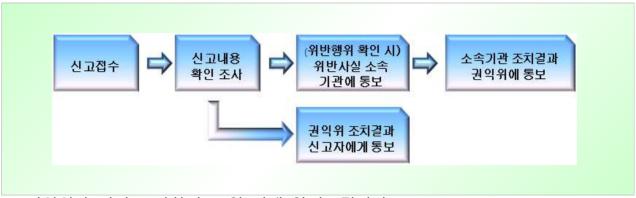
● 부패신고상담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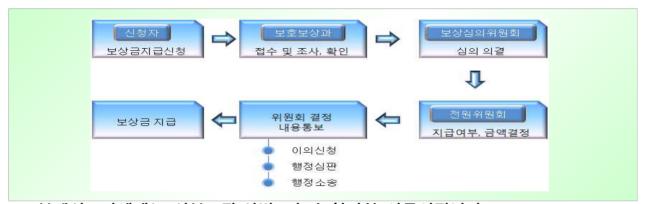


O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 행동강령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여 6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 □ 신고자 보상금 지급절차



○ 부패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2023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을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시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허용됩니다.

- 세,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 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 지법상 허용되나요?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 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드려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 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추진 근거

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2. / 추진 목적

- O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 용어 정의

| 용어 | 주체 | 의미 |
|----------|----------------|--|
| 선행 교육 | 교육관련기관 (학교)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
| 선행 학습 | 학생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 선행 출제 | 교육관련기관 (학교) |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 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

4. 학교 책무성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③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 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제3조1항에서 "교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교원 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가.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에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 다.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

2. /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 영역 | 개정 주요 내용 |
|----------------------------|---|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관할청에 의한 고발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

※ 개정내용의 세부사항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 참고

3. /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

4. | 함께 노력해 주세요.

선생님은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4

보건교육

1. 성비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예방

1 자주 발생하는 성 비위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 다.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뱡의 생식기를 만짐
- 라.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 비위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에게 반 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2 성 비위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나. 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라.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마.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 사.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아.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3 성 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 가. 신고전화 : 관할 경찰서 국번없이 112
- 나.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성 비위 피해 관련 긴급 위기 상담 및 신고전화**
- 다.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sisters.or.kr (02-338-5801~2)
-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 신고
- 마.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 활용 :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 /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란?

-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나.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도 포함)

2 가정폭력 자녀의 특징

- 가. <u>반사회적 성격 장애</u>: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합니다.
- 나. <u>신체화 장애</u>: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 과 증상을 호소하는 현상입니다.

3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경우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4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 **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나.**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3. 양성평등교육

1 양성평등이란?

- 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개념입니다.
- 나.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 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 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 실천 전략

- 가. 평등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나. 가사의 공동 분담, 함께하는 가족 활동,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 공동 의사 결정, 그리고 가족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 다.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 라.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에 유의합니다.

4.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 흡연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가. 청소년 흡연은 두뇌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에 해롭습니다.
-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 다. 청소년기 흡연은 키 성장 뿐 만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성장을 방해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운동장 포함)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2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 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입니다.
- 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웁니다.
-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어린이 곁에 갑니다.
- 마. 자녀가 흡연을 하는지 잘 살펴주시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3 마약류

※ 마약류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대표전화 1899-0893
- 군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063-464-0061.
- ※ 영상자료
- 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예방 홍보영상_식약처 https://youtu.be/XoZoxCsyPuo
- 나.[뉴스룸 모아보기]학교까지 침투한 마약...10대들의 '펜타닐' 중독
 - JTBC News https://youtu.be/9FY2dCind9o
- 다. 마약중독의 심각성 1편_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s://youtu.be/laKhrpMydBo

5. / 감염병 예방 교육

코로나19 방역지침

■ 변경지침(제9판 기준)

| 분류 | | 변경 지침 | | |
|------|---------|---|--|--|
| 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mark>확진인 경우 반드시 입력</mark>) | | |
| 등교 시 | 발열검사 | 전체 발열검사 폐지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 | |
| | 마스크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 |
| 등교 후 | 급식실 칸막이 | 폐지 또는 학교 자율 : 본교 운영 | | |
| | 소독 | 유지 | | |
| | 환기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 |
| | 관심군 관리 | 유지 | | |

■ 마스크 착용 기준

|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
|----------|--|
|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
|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착용 권고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1 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는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감염병 의심자,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 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염병

| 병 명 | 병원체 | 감염경로 |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
|---------------|------------|------------------|----------------------------------|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
| 수 두 | 수두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
| 유 행 성 이하선염 | 멈프스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
| 풍 진 | 풍진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 소실일까지) |
| 유 행 성 각결막염 | 아데노바이러스 | 눈곱, 분변 → 접촉감염 |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
| 홍 역 | 홍역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

2 등교 중지 방법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선생님께 전화연락을 하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의사소견서)를 담임선생님 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의사의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기간, 또는 감염성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료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수칙

■ 올바른 손 씻기 ■ 기침예절 지키기 ■ 음식 익혀먹기 ■ 예방접종 받기 ■ 해외 여행력 알리기

6. 미세먼지 대응 안내 교육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교육청 실무매뉴얼 근거)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 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이 개정되 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 1) 관련서류 제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 2) 고농도 미세먼지 시: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 3)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1교시 수업시작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에 해당

5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1. / 통합교육 안내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 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 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은 또래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나와는 조금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 청각 장애 시긴 신체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에 장애 장애 외부신체 가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번 장애 언어장애 의사소통 자폐성 장애 장애 장애 시각장에 안면장애 신장장애 포함기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심장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장에 간절장에

특수교육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u>특별한 교육적</u> <u>요구</u>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 /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나. 차별의 유형



장애인의 인권 보호

- ▶ 장애 유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부터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 ▶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장애학생의 눈높이를 맞추 고 바라보기,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것 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 ▶ 소외, 배제, 따돌림, 놀림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의 학교 문화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우리 자녀에게 알러주세요 ◆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개별학습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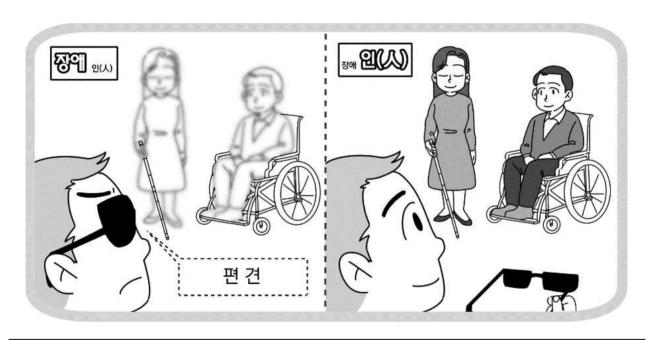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둘째, 장애인이나 특수학급(개별학습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 주세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같은 풍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바라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편견의 눈을 벗으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